



2026. 3. 16.

문서번호 : 지질동맥 2026-74

수 신 : 회원 제위

제 목 : 2026년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학술상 신청 안내의 건

1.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2. 2026년도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학술상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니 첨부한 규정을 참고하시고 제6조 추천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본 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평가 기준은 최근 5년간(2021.1~2025.12)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를 국내외 권위 있는 학술지에 책임저자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)로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, 연구성과의 우수성과 상호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. 또한 본 학회의 참여와 활동빈도 내역, 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(JLA)의 게재논문 및 인용논문 편수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.
4. 수상 자격 사항은 규정 제4조를 유의하시어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

- 다 음 -

- ▶ 대상 및 상금내역 : 2명 이내, 1인당 1,000만 원
- ▶ 신청마감일 : 2026년 5월 11일(월)
- ▶ 신청서류 : 신청서(이력서, 평의원 추천서 포함), 연구업적(논문의 목록 및 pdf 파일 또는 실적물 별책 각 1부)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
- ▶ 보내실 곳 : [ksla-2@lipid.or.kr](mailto:ksla-2@lipid.or.kr)

감사합니다.

- [첨부자료]
1.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학술상 규정 1부.
  2.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학술상 신청서 1부.
  3. 연구업적목록 1부. 끝.

한 국 지 질 · 동 맥 경 회  
회 장 김 성 래  
이 사 장 김 상 현



#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학술상 규정

제정: 2017년 9월 9일  
개정: 2018년 4월 16일  
개정 : 2019년 1월 23일  
개정 : 2019년 11월 20일  
개정 : 2021년 7월 21일

## 제 1 조 (명칭)

본 학술상은 “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학술상”이라고 칭한다.

## 제 2 조 (목적)

지질·동맥경화 학문분야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장려하고자 학문발전에 탁월한 공헌이 인정되는 연구자에게 학술상 수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3 조 (수상 대상)

학술상 수상 대상자는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정회원으로 매년 2명 이내로 한다.

## 제 4 조 (수상대상자의 자격)

**(1)**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정회원으로서 지질·동맥경화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도 및 업적이 높은 연구자이어야 하며, 1회에 한하여 수상할 수 있다.

**(2) 2019년 이후 발간된 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지 Journal of Lipid and Atherosclerosis (JLA)에 제1 저자 또는 교신 저자로 한 편 이상의 원저나 종설을 게재하거나 게재 예정이어야 한다. <2021.7.21>**

## 제 5 조 (운영위원회)

한국지질·동맥경화학회 상선정위원회가 본 상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. 본 위원회에서 추천한 연구자 중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한다.

## 제 6 조 (추천 구비서류)

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상선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(1) 신청서1통 - 첨부양식
- (2) 연구업적 - 논문의 목록 및 pdf파일 또는 실적물 별책 각1부
- (3) 평의원 추천서 1통
- (4)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

## 제 7 조 (학술상 심사)

학술상 대상 후보자는 상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.

심사규정 :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수행한 연구를 국내외 권위 있는 학술지에 책임저자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)로

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업적을 평가한다.

제 8 조 (수혜자 임무)

수혜자는 연구업적에 대한 종설을 6개월 이내에 JLA에 투고하여야 한다. 투고 논문에는 “This study was supported by funding from the Korean Society of Lipid and Atherosclerosis” 문구와 상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. 또한 연구업적을 ICoLA에서 강의해야 한다. <2021.7.21>

제 9 조 (기금 및 부상의 규모)

본 학술상의 기금 및 부상의 규모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10 조 (부칙)

1.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발효한다.
2.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